

한국 인권교육 현황과 과제

오 완 호*

이 글은 본인의 연구와 실태조사에 근거하지 않았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용역실태조사사업으로 성공회대 사회복지연구소가 제출한“국내외 공공분야 인권교육 실태조사”보고서와 한국인사행정학회가 제출한“인권교육원 설립방안 모색”보고서를 근거로 작성되었다. 대부분의 내용은 두 보고서에서 서술 내용을 옮겼으며, 한국에서의 인권교육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서술하기 위해 본인의 분석과 의견을 첨가하였다.

I. 한국 인권교육 현황

90년대 중반부터 한국에서도 몇몇 인권단체에 의해 인권교육의 개념이 도입되었으며, 인권학교, 인권캠프 등 초보적 수준의 인권교육이 실시되었다.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면서 인권교육에 대한 총체적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다. 인권교재 및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인권 강사단이 조직되며 공공부분에 대한 인권교육의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다. 경찰 및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이 실시되었으며, 인권교육에 대한 여러 조건에 대한 분석이 시도되었으며, 현재 중장기 계획에 근거한 통합적 인권교육의 실시를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가칭)인권교육법의 제정단계로 발달해 왔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군사문화, 유교문화, 입시교육 등 여러 제도적, 관습적 장애물 등이 인권교육의 실시를 가로막고 있다. 이 글은 현재 한국사회에서의 인권교육의 현황을 분석하고 인권교육의 전면적 실시를 위한 제 조건들을 다루어 보고자 한다.

1.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 현황

국가수준의 인권교육이 시작된 것은 2001년 11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더불어서이

* 한국인권행동 사무총장

2 인권비로라 실천

다. 초기에는 교육협력국 산하 '인권교육담당관'으로 운영되다가, 2005년 12월 30일에 공포된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전부개정령안」에 의해서, 학교교육팀, 공공교육팀, 시민교육팀으로 구성된 '인권교육본부'가 조직되어 인권교육이 세 분야로 확대 개편되었다.

1) 공공부문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

국가인권위원회의 공공부문의 인권교육 전담 부서는 공공교육팀(팀장:임송)임. 추진 조직의 주요 업무와 조직현황은 아래와 같음.

① 공공교육팀 조직 현황

- 인원 : 8명 (팀장, 팀원 5, 인턴 2)
- 연수과정 운영(60), 교육 프로그램개발 연구용역(70), 워크숍(5)

② 공공교육팀의 주요 업무

- 공공부문 인권교육 기본계획 수립·종합 및 조정
- 공공부문 인권교육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 개선 사항 연구 및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의견 표명에 대한 활동과 관련 분야 국내·외 협력
- 공공부문 인권교육 기본계획 수립·시행
- 공공부문 인권교육업무 관련 기관 협의
- 공공부문 인권교육 프로그램·자료의 개발 및 보급
- 공공부문 인권 전문인력 양성·훈련
- 공공부문 관련 국내·외 인권관련 교육제도 및 교육운영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③ 2006년도 공공부문 인권교육 관련 주요 사업 계획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교육팀의 2006년 인권교육 관련 주요 사업계획은 인권교육 기반구축, 인권교육 제도화, 교육과정 운영, 대외 협력 및 지원 등 크게 4 분야로 구성되어 있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공공부문별 인권교육 관리 체계는 공공교육팀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음. 법무분야는 법무부 법무연수원을 통해 관리하고 있고 주요 직군(교육대상)은 검찰, 출입국사무소, 교정직이며

교육은 법무원연수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군대분야는 국방부 인권팀을 통해 관리하고 있고 주요 직군(교육대상)은 육군, 해군, 공군의 군 장교, 부사관, 군무원, 장병들이며, 국방부 교육 수행은 각 군의 교육사령부와 사관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경찰분야는 경찰청 인권보호센터를 통해 관리하고 있고 주요 교육대상은 경찰공무원, 전·의경들이며 교육 수행은 경찰청 소속의 교육기관인 경찰종합학교, 중앙경찰학교, 지방경찰학교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행정분야는 행정자치부 산하의 중앙공무원연수원, 지방혁신인력개발원, 16개 지방공무원교육원을 통해 관리하고 있고 교육대상은 중앙부처 공무원, 지방공무원들임. 사회복지분야는 (재)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을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주요 직군(교육대상)은 사회복지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장, 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임.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할 것.

[표] 국가인권위원회 공공분야 2006년 인권교육 주요 사업계획

분야	사업내용	추진현황
인권 교육 기반 구축	• 공공분야 인권교육 실태조사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학술용역
	• 공공분야 인권교육 연구회 구성·운영	인권교육 지침서 개발
	• 인권교육 관련 협력체계 구축	인권교육 관계자 협의회 구성·운영 공공시민인권교육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인권 교육 제도화	• 군분야 인권교육 제도화 추진	군 인권교육 지침서 개발 '군인복무기본법'(안) 중 교육에 관한 사항 검토 및 의견표명 군 정신교육 교재에 인권내용 포함
	• 사회복지 분야 인권교육 제도화 추진	대학사회복지학과 커리큘럼에 인권과목 개설 사회복지사자격시험과목에 인권과목 포함
교육과 정운영	• 군대 인권교육 핵심인력 육성 • 다수인보호시설 분야 인권교육 인력 육성	연수과정 (2박3일) 및 4개 권역별 순회교육 연수과정 운영 (아동, 장애, 복지분야)
대외 협력 및 지원	• 인권교육 동향 모니터링 및 메일링 서비스 제공	휴먼레터에 통합
	•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2개 분야: 군대, 다수인보호시설 분야)	군대 장애분야
	• 인권강사 파견	인권강사 지원체계 효율화 방안 검토
	• 기관방문 이벤트 실시	음악회, 인권영화 상영 등

4 인권비로라 실천

[표] 국가인권위원회의 공공분야별 인권교육 관리 체계

부문		총괄부서	교육대상	유관기관	비고
법 무 부	검찰	법무부 법무연수원	검사		*법무연수원에서 지방포함 총괄 교육
			사무직		
			소년보호직		
			보호관찰직		
	출입국		지방 사무소		
교정	교정직	지방 교정청			
군대	국방부 인권팀	군간부	육해·공군	교육사령부 사관학교	
경찰	경찰청 인권보호센터	경찰 전체	경찰종합학교		
행정	중앙공무원연수원	정부부처 공무원	정부 부처 교육원	*지방혁신인력개발 원에서 총괄 관리	
	지방혁신인력개발원	지방행정직 5급이상			
	지방공무원교육원	지방행정직 5급이하			
사회 복지	한국보건복지 인력개발원	복지행정직, 사회복지전 담공무원시설종사자	각종 사회복지기관 협의회		

④ 공공 교육팀의 공공부문에 대한 인권교육지원현황

아래 「표」 들은 2002년부터 최근까지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공부문에 대해 인권교육 관련 지원활동을 수행한 현황을 정리한 것임.

[표] 국가인권위원회 공공부문 인권특강교육 지원 현황 (2002년-2006년.10월)

구 분	계		경 찰		검찰, 교정, 출입국 등		군 대		교원(교육행정 포함)		기 타	
	회수	인원	회수	인원	회수	인원	회수	인원	회수	인원	회수	인원
2002	28	3,820	28	3,820	-	-	-	-	-	-	-	-
2003	99	9,520	80	8,223	9	664	2	153	6	400	2	80
2004	60	5,757	26	3,080	18	807	-	-	5	750	11	1,120
2005	122	15,278	48	5,546	28	1,199	18	6,104	13	1,106	15	1,323
2006	118	9,121	48	4,489	7	299	6	720	23	1,344	34	2,269
총 계	427	43,496	230	25,158	62	2,969	26	6,977	47	3,600	62	4,792

* 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본부. 2006년 11월. 『2006년도 업무추진 현황』

[표] 국가인권위원회 방문 프로그램 운영 현황 (2002년-2006년.10월)

구 분	계		경 찰		교 원/학 생		기 타	
	회 수	인 원	회 수	인 원	회 수	인 원	회 수	인 원
2002년	-	-	-	-	-	-	-	-
2003년	13	885	8	700	4	175	1	10
2004년	23	1,224	8	800	12	399	3	25
2005년	21	1,072	12	655	7	367	2	50
2006년	31	825	7	209	17	497	7	119
총 계	88	4,006	35	2,364	40	1,438	13	204

* 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본부. 2006년 11월. 『2006년도 업무추진 현황』

[표] 국가인권위원회 공공부문 연수과정 운영 현황 (2002년-2006년.10월)

구 분	과 정 명	회 수	대 상	인 원	교육기간
2003년	경찰대상 인권연수	1	경찰	34	10.31~11. 1
2004년	경찰 공무원 인권연수	1	경찰공무원	35	9.15~9.17
	검찰 공무원 인권연수	1	검찰공무원	23	9.20~9.22
	교정 공무원 인권연수	1	교정공무원	35	10.25~10.27
2005년	경찰대상 인권강사 양성 연수	1	경찰	17	6.27~7. 1
	교정공무원 인권교육 강사양성	1	교정	35	10.11~10.14
	검찰공무원 인권교육 강사양성	1	검찰	28	10.18~10.21
	군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연수	1	군인	36	12.13~12.16
2006년	사회복지분야 인권관점 도입·확산워크숍	3	사회복지 공무원, 종사자, 학생	500	6. 23/26/27
총 계					

* 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본부. 2006년 11월. 『2006년도 업무추진 현황』

6 인권비로라 실천

[표] 국가인권위원회 공공부문 인권교재 및 자료 개발 현황 (2002년-2006년 10월)

구 분	자 료 명	연 도	비 고
공공분야	인권길라잡이-경찰편	2002	경찰공무원 인권교육 자료
	인권길라잡이-교정편	2002	교정공무원 인권교육 자료
	교도관의 인권길찾기(VTR)	2002	
	인권길라잡이-검찰편	2002	검찰공무원 인권교육 자료
	행정과 인권	2003	행정공무원 인권교육 자료
	공무원 인권교육 표준교안	2002	강사용 인권교육 자료
	경찰인권교육방법	2003	경찰교육가를 위한 인권교육 자료
기 타	인권교육발전 5개년 기본계획 관련 연구	2003	연구용역 보고서
	인권교육현장사례집	2003	각 인권단체 등에서 실시된 인권교육 프로그램 모음

* 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본부, 2006년 11월, 『2006년도 업무추진 현황』

2) 학교부문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

국가인권위원회의 학교부문의 인권교육 전담 부서는 학교 교육팀(팀장:김철홍)임. 추진 조직의 주요 업무는 아래와 같음.

① 교원 인권연수과정 운영

- 2004년: 초등교사(34명), 중등교사(30명)을 대상으로 인권교육과정 운영
- 2005년: 시도교육청 및 연수원 인권교육 담당자를 대상으로 학교 인권교육의 이해 워크숍/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을 함께 담당하고 있는 통합학급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과정 운영(초·중등교사 131명, 교장·장학관 워크숍 32명)

② 인권교육 연구학교 운영

- 2004년 3월부터 2년간 대평(부산), 송도(인천), 오리(경기 성남), 쌍용(충남 천안), 의령(경남 의령)의 5개 초등학교를 인권교육 연구학교로 지정, 운영

③ 인권교육 자료 개발

위원회에서는 학교 인권교육을 위한 교사용 안내서와 실제 교실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 교사용 교재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길잡이」 (2002)

- 「우리 교과서의 인권이야기」 (2002)
- 「교사를 위한 학교 인권교육의 이해」 (2004)
-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기본용어」 (2004)
- 「피부색은 달라도 모두가 평등합니다」 (2004)
-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2005) -초등학교용 인권교육 교재
- 「인권, 누구에게나 소중해요」 (2006) -중학교용 인권교육 교재
- 「사람이 곧 하늘이다」 (2006) -고등학교용 인권교육 교재

- 인권동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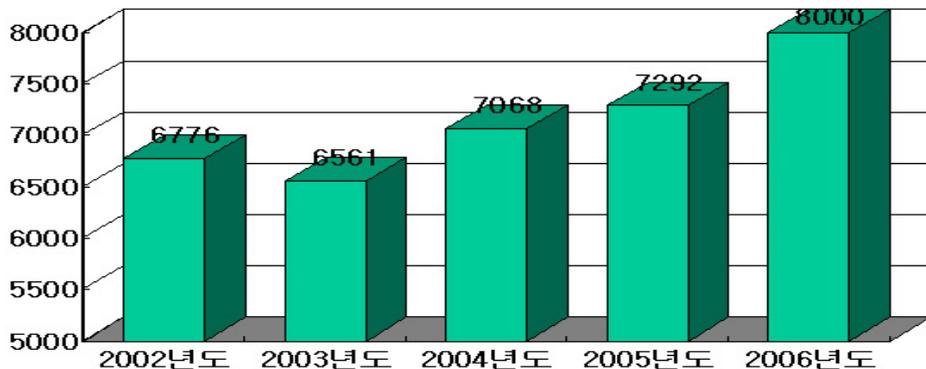
- 「흰둥이네 할머니」, 「엄마, 엄마」 (2002)
- 「장한 친구 희완이」, 「다르게 함께 사는 세상」 (2003)
- 「블루시아의 가위바위보」 (2004)

[표] 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 인권교육배움터 인권강좌 현황

과정명	일반과정	전문과정
강좌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의 이해 - 사회적 약자의 이해 - 성차별 예방 과정 - 장애차별 예방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과 인권 - 검찰과 인권 - 행정과 인권 - 교도관과 인권 - 아동권리의 이해

2. 법무분야 인권교육 현황/ 법무원수원 (검찰, 교정, 출입국관리사무소)을 중심으로

[그림] 법무연수원 최근 5년간 인권교육 실적



* 자료: 법무연수원. 2006년. 『2006년도 교육훈련계획』

8 인권비로라 실천

실태조사에 따르면, 법무연수원에서 2006년에 시행하고 있는 인권교육 현황은 다음 「표」와 같음.

[표]법무연수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권교육 현황 -1

교육범주	교과목명	교육 대상	교육 시간	교육 인원	강 사	
					성명	현직 및 경력
직무분야와 관련한 인권교육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	검사	2	(188)명 (3)회	이국재 이옥	변협 인권이사 법무부 인권옹호과장
	범죄피해자의 보호	검사	2	(140)명 (3)회	김경석 김덕재	법무부 인권과장 진주시청장
	수사와 인권	검사	1	(102)명 (2)회	서경석	조선족교회 목사
	약식사건 양형요령 및 약식사건 수사와 인권	검찰직	2	(34)명 (1)회	최진규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
	강력수사와 인권	검사	1	(95)명 (2)회	서경석	조선족교회 목사
	환경과 인권	검사	2	(112)명 (2)회	김혜정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수사와 인권	검찰직	2	(1090)명 (12)회	진선룡 장경옥	변호사 민변 사무차장
	보호관찰과 인권	보호 관찰직	2	(230)명 (7)회	진수명	국가인권위
	소년보호와 인권	소년 보호직	2	(70)명 (3)회	천정범	일반교수
	법무행정과 인권	전직렬	2	(110)명 (4)회	최정석	법무부 혁신인사기획관실
사회적소수자 및 그들의 차별에 관한 교육	외국인의 인권보호	출입국	2	(380)명 (8)회	김창완	국가인권위
여성 및 양성평등에 관한 인권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6급이하 전직렬	1	(4099)명 (62)회	이영희	교정연수부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본 성폭력 피해자조사	검사	2	(123)명 (2)회	전길양 이상화	양성평등평생교육진흥 원 교수
	여성과 인권	6급이하 여직원	1	(80)명 (2)회	강남식	양성평등교육 진흥원

위의 「표」에서 파악된 법무연수원 인권교육 현황을 실적(양적)으로 재구성하면 아래 「표」와 같음.

[표] 법무연수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권교육 현황 -2

교육범주	총 교과정수	교육대상	총 교육참 가인원	총 교육 회수	강 사		
					총강사 수	내부	외부
직무분야와 관련한 인권교육	11개	검사, 검찰직, 보호관찰직, 소년보호직, 교정직(6급이하)	6374 명	101 회	14명	6명	8명
자유권 교육	0개	-	0명	0회	0명	0명	0명
사회적소수자 및 그들의 차별에 관한 교육	1개	출입국	380명	8회	1명	0명	1명
여성 및 양성평등에 관한 인권교육	3개	6급이하 전직렬 검사 6급이하 여직원	203명	4회	4명	1명	3명
사회적 약자에 관한 인권교육	0개	-	0명	0회	0명	0명	0명
총 교과정 현황 정리	15개	검사, 검찰직, 보호관찰직, 소년보호직, 교정직(6급이하)	6957 명	113 회	18	7명	11명

3. 군대분야 인권교육 현황/ 육군, 해군, 공군을 중심으로

군대분야의 인권교육 추진은 법무분야와 마찬가지로 직무교육에 인권교육을 일부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장병기본권 교육의 일환으로 2006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군대 인권교육을 관장하는 총괄 기관은 국방부의 법무관리관실 소속의 '인권팀'이 주무부서이며, 군대분야의 인권교육의 주요 직군은 장교, 부사관, 장병, 군무원이다. 국방부 인권팀에는 총 6명의 전담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며, 인권팀의 주요 업무는 아래 「표」와 같다. 국방부의 인권팀 설립은 2006년 1월 1일부로 국방부 직제개정으로 신설되었으며 현재 팀장은 이성주 변호사이다.

[표] 국방부 인권팀의 업무 현황

인권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내 인권정책 및 교육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인권 관련 법령·제도에 관한 사항 - 군내 인권 실태에 대한 조사 및 구제 - 인권 담당 법무관 제도 운영 -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인권 관련 진정 및 민원사항 처리 - 인권 관련 국제협약 가입 및 국내 시행에 관한 사항
-----	---

*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2006년. 『국방부 인권팀 방문 결과 보고』

육군의 경우 인권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자체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와 같음.

[표] 육군의 최근 2년간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자체 수립한 계획 및 보고서 현황

계획서, 지침서, 보고서의 명칭	작성 시기	비고
장병기본권 보장 교육지침	05. 4. 11	육군본부 지침 및 방침으로 작성되어 전 부대에 적용 중
부하사병화 금지지침	06. 2. 27	
장병기본권 상담실 운용방침	06. 3. 31	
비전캠프 운용 지침	06. 4. 3	

국방부의 인권교육은 2006년 이전에는 실적이 거의 없었으며, 2006년부터 국방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병기본권 교육의 기본 과정은 아래 「표」 와 같음.

[표] 국방부의 장병기본권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과정 ◎ 장교(사관학교, 3사교, 학군교) : 반기 1회, 3H 이상(학사장교는 2H 이상) ◎ 병, 준·부사관 : 2H 이상 ‘ 보수과정 ◎ 고급군사반 : 2H 이상 ◎ 각 군 대학 : 4H 이상 ◎ 국방대(안보과정, 합참대) : 6H 이상 ◎ 부사관 2중급 이상 과정 : 2H 이상 ◎ 대형 장군진급반, 무궁화회의 등 : 1-2H ‘ 부대 교육훈련시 : 반기별 1-2H 이상, 수시 기획 교육 시행

1) 육군의 인권교육현황

① 장교양성 및 보수교육

장병기본권 과목으로 육사, 3사, 학군교는 반기 1회 3시간 이상(학사는 2시간 이상)을 반영하고 있으며, 보수교육 과정에서는 고군반에서 2시간 이상, 각 군대학에서는 4시간 이상 반영하고 있음. 교육방법은 강의, 토론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교육 담당자는 교수, 교관이 직접 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양성교육 및 보수과정 전과정에 초빙교육(초빙강사는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요원, 대학교수)을 2시간 반영하고 있음. 교재는 군법교재, 시청각 자료 등에 의존하고 있음(김열수, 2006)

② 부사관 양성 및 보수교육

장병기본권 과목으로 양성과정에서 2시간이상, 보수과정에서는 부사관 중급이상 과정에서 2시간 이상 반영하고 있음. 교육방법은 장교교육과 마찬가지로 강의, 토론 위주로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과목 교관에 의해 전담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김열수, 2006).

③ 부대교육

부대에서의 인권교육은 지휘관 정신교육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 육군의 부대에서 시행되고 있는 인권교육에 대해 김열수(2006)는 대상자별 지휘관 책임아래 2005년 3월부터 다음과 같은 인권교육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육군에서 대대장은 주1회 병사를 대상으로 구타·가혹행위 금지, 폭언·욕설금지, 부당한 명령 거부권, 의견건의·고충처리권, 안전권 등에 대하여 교육하고 있으며, 연대장은 월1회 위·준·부사관을 대상으로 육군인권선언 낭독 및 제창, 병사기본권 보장, 간부기본권 보장, 지휘통솔 및 임무수행 기법 건의 및 고충수렴을 교육하고 있으며, 사·여단장은 분기1회 영관장교를 대상으로 육군 인권선언 낭독 및 제창, 장병기본권 보장, 부대 운용 여건 보장 건의 및 고충수렴을 교육하고 있다고 보고하였음. 그러나 육군 부대 운영의 폐쇄성, 명령지상주의라는 특성상 이러한 교육 방법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며, 실질적인 인권증진의 일환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에는 힘들.

④ 여성 및 양성평등에 관한 인권교육

육군의 경우 여성 및 양성평등에 관한 인권교육으로 '성인지력 향상' 교과정이 운영되고 있으며 2006년에 1,589명, 6회의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교육시간은 2-3시간이 배정되어 있으며, 교육 강사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협조를 받고 있음.

2) 공군의 인권교육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군에서 2006년에 시행하고 있는 인권(장병기본권)교육 현황은 다음 「표」 와 같음.

[표] 공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권(장병기본권)교육 현황

교육범주	교과목명	교과목명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기관	
직무분야와 관련한 인권교육	양성과정	장병기본권 교육	○ 장병 기본권 개념 정립 및 보장을 위한 사례중심 교육(토의 포함) - 기본권 개념 및 중요성 - 장병기본권 관련 법규 및 침해사례 - 기본권 침해 발생시 조치요령 - 기본권 침해 예방대책	장교 부사관 장병	2	공사 교육사
		안전관리	○ 각종 군기관련 사고예방교육을 통한 인권침해 방지 교육 - 3대 악성사고사례/방지 대책 (구타/가혹행위, 음주운전, 파렴치행위) - 자살 및 탈영 예방교육(VTR 시청)	장교 부사관 장병	4 4 2	공사 교육사
		인성교육	○ 올바른 인간관계 및 인성확립을 위한 리더십 교육 - 조직과 인간관계 - 충, 효, 예 교육 - 자아성찰 등	장교	16	교육사
	보수과정	장병기본권교육	상동	장교(고급) 장교(초급) 부사관	4 2 2	교육사
		부하상담기법	○ 장병 인권 보장 및 자살사고 예방을 위한 상담자로서 기본 능력 및 자질 함양 - 상담과정, 기술, 이론 지식 습득 - 상담사례 분석 및 실습	장교(고급) 장교(초급) 장교(중령) 군무원	14 16 2 4	교육사
		여성 및 양성평등에 관한 인권교육	○ 여성/여군 인권보호 차원의 교육운영 - 성희롱 예방 및 성매매방지법 - 육아휴직, 보건의료 등 모성보호 교육 - 군 여성 활용 현황과 양성평등 비전 - 양성평등 패러다임 변화와 성주류화 - 일상생활에서 이뤄가는 양성평등	장교(생도) 장교 부사관 장병	14 2 2 2	공사 교육사
성윤리 (양성과정)	○ 여성 및 여군에 대한 인권보호 차원에서 과목 운영 - 성희롱의 법적 한계 및 구분 - 올바른 성윤리관 형성 유도 - 성희롱 예방대책	장교(사후)	2	교육사		

공군 인권교육에서 교육강사 운영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

[표] 공군 인권교육에서 교육강사 운영현황

구 분		담 당 교 관
군 법 (장병기본권)	공 사	◦학교 자체 교관(법학과, 군사훈련처)
	교육사	◦양성과정(군법) : 법무실 군법교육담당 ◦보수과정(장병기본권) : 각 학교 교관실장
성인지력 향상 및 성군기 위반사고 예방	공 사	◦학교 자체 교관(생도대 여훈육관)
	교육사	◦양성과정 : 훈련단 일반학 교관 ◦보수과정 : 각 학교 국내실무 연수 수료자

공군 인권교육에서 교재 활용 현황은 아래 「표」 와 같음.

[표] 공군 인권교육에서 교재 활용 현황

구 분		담 당 교 관
군 법 (장병기본권)	공 사	◦법학개론 ◦군대윤리(공사) ◦장병기본권 보장 교육자료(공군본부)
	교육사	◦장병기본권 보장 교육자료(공군본부)
성인지력 향상 및 성군기 위반사고 예방	공 사 교육사	◦군인의 성인지력 향상 교육(국방부, 교재) ◦성군기 위반사고 예방 안내서(국방부, 교재) ◦“양성평등, 실천하니 좋아요”(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재) ◦성희롱 예방(국방부, CD 자료) ◦성매매 방지 종합대책(국방부, PPT자료)

3) 해군의 인권교육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해군에서 2006년에 시행하고 있는 인권(장병기본권)교육 현황은 다음 「표」 와 같음.

[표] 해군에서의 인권(장병기본권)교육 과정 운영 현황

교육과정		교육대상	연간교육횟수	교육시간	
해군대학	대학과정	정규반	소 령	1	4시간
		고군반과정	소 령	2	4시간
	고군반과정	해고반	대 위	3	2시간
		군고반	대 위	1	2시간
기 초 교	부사관후보생		부후생	3	2시간
	신 병		신 병	12	2시간
전투/기술/ 행정/정통/ 리더십센터	중급반		중 사	10 ~ 22	2시간
	고급반		상 사	2 ~ 19	2시간
학 군 단	교내교육		학군사관 후보생	2	6시간

해군 인권(장병기본권)교육 과정의 세부 교육 내용은 아래 「표」 와 같음.

[표] 해군 인권(장병기본권)교육 과정 세부 교육 내용

구 분	교 육 내 용
해군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과 기본권 개념 ○ 주요 쟁점사례 (육군 훈련소 인분사건, 총기 난사사건 등) ○ 기본권 보장 추진계획(관련조직 소개, 해본 추진내용 소개 등) ○ 언어순화(언어폭력 처벌기준 소개, 사례 토의 등)
기 초 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권의 개념과 유형, 기본권 보장의 중요성 ○ 장병 기본권 관련 법규 ○ 병영내 기본권 침해 사례 및 침해시 조치사항
전 투 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권 일반내용(인권과 기본권 개념 등) ○ 장병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요소 및 자세 ○ 장병 기본권 보장 환경 조성
기 술 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권 일반이론(기본권 개념/본질 등) ○ 장병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요소 및 자세 ○ 장병 기본권 보장 환경 조성
행 정 교, 리더십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과 기본권 개념 ○ 장병 기본권 침해 유형 및 사례 ○ 기본권 향상방안
정 통 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권 일반 이론(개념과 유형, 제한과 한계, 중요성) ○ 장병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자세(상관/부하로서의 자세 등) ○ 장병 기본권 보장 환경 조성(주기적인 교육 및 부대 진단 등) ○ 장병 기본권 관련 법규 및 침해 사례
학 군 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권 일반이론(개념, 본질) ○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요소 및 자세(인간관계의 이해 등) ○ 기본권 침해 발생시 조치요령(침해사고 접수/인지시 조치 등) ○ 기본권 침해관련 사고예방 대책

해군 인권(장병기본권)교육 과정에서의 교관, 교재 등의 실태는 아래 「표」와 같음.

[표] 해군 인권(장병기본권)교육에서 교관, 교재, 교육 방법 현황

구분	교관	교수안	교육방법	교육교재
해군대학	소령 1 * 국가인권위원회 주관 “군인권 감수성 향상과정” 수료('05.12)	자체작성 (문서+PPT)	강의+토의	○ 장병 기본권 보장 -기본권 일반이론 -장병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요소 및 자세 -장병 기본권 보장 환경 조성 *국방부 지침을 근거로 작성, 예하부대 배포 완료('05. 9)
기초교	중위 1	자체작성 (PPT)	강의	
전투교	대위 1, 준위 3, 상사 1	자체작성 (문서+PPT)	강의+토의	
기술교	준위 1, 원사 2, 상사 3	”	”	
행정교/ 리더십센터	중위 1	자체작성 (CBT)	강의	
정통교	중위 1, 준위 1, 상사 2	자체작성 (문서)	”	
학군단	5급 1	자체작성 (문서+PPT)	”	

4. 경찰분야 인권교육 현황

경찰분야의 직무교육을 관장하는 총괄 기관은 경찰청 교육과이고 주무기관은 경찰청임. 경찰 직무교육은 경찰청 소속의 각 교육기관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육 대상은 경찰공무원(전·의경 포함) 전체이다. 경찰청 교육기관은 경찰대학, 경찰종합학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보안연구소, 지방경찰학교 등이며, 경찰분야의 인권 활동과 인권교육을 전담하는 부서는 '경찰청 인권보호센터'이며, 담당인력은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찰분야의 인권교육 계획은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인권교육 추진체계 확립, 경찰관 인권강사 양성 부분으로 크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경찰관이 연간 10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2005년 6월에 수립한 '경찰 인권교육 강화 기본계획'이 기본 내용이다.

경찰분야의 인권교육은 크게 경찰청 소속 교육기관(경찰대학, 경찰종합학교, 지방경찰학교 등)과 경찰서 2가지로 이루어짐. 2005년 경찰분야에서 진행된 인권교육 활동 실적은 아래 「표」와 같음.

[표] 경찰분야 2005년도 인권교육 실시 현황 (2005. 1. 1-12. 31)

합 계		경 찰 관 서		교 육 기 관 교 육	
횟수	연인원	횟수	연인원	과정	연인원
2,236회	293,992명	2,063회	259,183명	173개	34,809명

* 자료 : 경찰청 인권보호센터 보고 자료, 『2005년도 인권교육 실시 현황』

[표] 경찰분야 2006년도 인권교육 실적 목표 (단위: 과정수, 명)

합계		경찰대학		경찰종합학교		중앙 경찰학교		수사보안 연구소		지방 경찰학교	
과정수	인원	과정수	인원	과정수	인원	과정수	인원	과정수	인원	과정수	인원
139	37,141	14	2,385	43	14,130	45	14,664	24	3,970	13	1,992

*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내부 자료(2006.2). 『경찰청 방문 결과 보고』 .

[표] 경찰분야 인권교육 현황

교육범주	교과목명	교육기관	교육대상	교육 시간	강사
직무 분야와 관련한 인권교육	경찰과 인권	경찰대학	치안정책과정 경감·경정기본과정	7 5	외부
		경찰종합학교	경사·경위기본과정 간부후보생과정	7 7	외부
		중앙경찰학교	전·의경과정 신임교육과정	7 2	외부
		수사보안연구소	수사지휘과정 전문과정	7 2	외부
		지방경찰학교	인권과정	7	외부
		경찰대학	치안정책과정 경감·경정기본과정	3 2	외부
	범죄피해자의 이해	경찰종합학교	경사·경위기본과정 간부후보생과정	3 3	외부
		중앙경찰학교	신임교육과정	3	외부
		수사보안연구소	수사지휘과정 전문과정	3 2	외부
		지방경찰학교	인권과정	3	외부
	인권의 이해	경찰대학	전문과정	2	내부
		지방경찰학교	실무과정	2	내부
		경찰서	직장교육훈련	1	내부

5. 행정 분야 인권교육 현황/ 중앙공무원연수원, 지방혁신인력개발원, 지방공무원교육원을 중심으로

행정 분야는 공공 부문에서 인권교육 추진 체계가 가장 취약한 상황이며, 행정분야 직무교육은 산하 교육기관인 중앙공무원연수원, 지방혁신인력개발원, 16개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이루어지며 자체 직무교육에 인권교육을 시행하는 규정이나 방침은 없는 실정이다. 행정 분야의 직무교육을 관장하는 주무부서는 행정자치부이며 중앙 공무원 대상 교육기관은 중앙공무원연수원, 5급이상 지방공무원 대상 교육기관은 지방혁신인력개발원이며, 하급이하 지방공무원 대상 교육기관은 16개 지방공무원교육원임.

행정 분야 공무원 교육훈련 체계를 정리하면 아래 「표」 와 같음.

[표] 행정 분야의 교육훈련 체계

구분	중앙공무원연수원	지방혁신인력개발원	경기도공무원교육원
교육대상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 외국공무원	지방자치단체공무원(5급이상), 지방의회의원, 외국공무원	지방자치단체공무원(5급이하), 주민자치센터위원, 산하단체 직원
교육추진체계	수요조사(매년 12월경)→차기년도 교육계획(안)수립→시행	수요조사(매년 11,12월경)→차기년도 교육계획(안)수립→행정자치부협의→시행	수요조사(매년 7,8월경)→차기년도 교육계획(안)수립의→시행
2006년 교육훈련 계획	67개과정, 170회, 8,156명	98개과정, 162회, 12,895명	82과정, 154회, 10,670명
프로그램 운영 방식	자체적으로 교과편성 강사는 외부에 의존	좌동	좌동
강사 pool	외부강사 DB관리	좌동	좌동
교육근거법령	공무원교육훈련법	공무원교육훈련법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업무보고 자료, 『행정분야 교육기관 방문 결과 보고』

18 **인권비로라 실천**

1) 중앙공무원연수원의 인권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앙공무원연수원에서 2006년에 시행하고 있는 인권교육 현황은 다음 「표」와 같음. 중앙공무원연수원에서 인권교육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응답 결과 여성 및 양성평등에 관한 인권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이 교육은 인권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보다는 직무교육 중 여성 및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표] 중앙공무원연수원의 인권교육 과정 운영 현황

교육범주	교과목명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인원	강사	
					성명	현직 및 경력
여성 및 양성평등에 관한 인권교육	양성평등교육	전원	2	130명 (1회)	강남식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수

2) 지방혁신인력개발원 인권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연수원에서 2006년에 시행하고 있는 인권교육 현황은 다음 「표」와 같음.

[표] 지방혁신인력개발원의 인권교육 과정 운영 현황

교육범주	교과목명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인원	강사	
					성명	현직 및 경력
여성 및 양성평등에 관한 인권교육	여성문제	지방 3,4급	2	(28)명 (1회)	서명선	한국여성개발원장
	한국의 왜곡된 성실태와 선진성문화정착	지방 3,4급	2	(28)명 (1회)	김상원	한국성교육학회장
	양성패러다임의 변화와 성새롭게 보기	지방 5,6,7급	2	(29)명 (1회)	김상원	강남대학교 교수
	양성평등과 여성정책	지방 5,6,7급	2	(27)명 (1회)	윤현덕	여성가족부 팀장
	전통생활문화와 양성평등	지방 6급	3	(250)명 (5회)	진민자	청년여성문화원 이사장
	성별고정관념 성찰하기	지방 5,6,7급	2	(27)명 (1회)	김영한	별자리사회심리극연구소장

3) 지방공무원교육원의 인권교육

인권교육을 시행하고 있다고 응답한 지방공무원교육원의 인권교육 현황은 다음 「표」와 같음.

[표] 지방공무원교육원의 인권교육 과정 운영 현황

구 분	교 육 범 주	교육대상	교육건수
인 천	여성 및 양성평등에 관한 인권교육	6급이하	1건
충 남	여성 및 양성평등에 관한 인권교육	6급이하	6건
충 북	직무분야와 관련한 인권교육	6급이하	3건
	여성 및 양성평등에 관한 인권교육	6급이하	5건
광 주	여성 및 양성평등에 관한 인권교육	6급이하	8건
전 남	여성 및 양성평등에 관한 인권교육	6급이하	1건
	사회적 약자에 관한 인권교육	6급이하	1건
전 북	여성 및 양성평등에 관한 인권교육	6급이하	9건
	사회적 약자에 관한 인권교육	6급이하	9건
경 남	여성 및 양성평등에 관한 인권교육	6급이하	7건
경 북	여성 및 양성평등에 관한 인권교육	6급이하	5건
	사회적 약자에 관한 인권교육	6급이하	4건
강원도	직무분야와 관련한 인권교육	6급이하	2건
	여성 및 양성평등에 관한 인권교육	6급이하	1건
제주도	직무분야와 관련한 인권교육	6급이하	2건

6. 복지 분야 인권교육 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2006년에 시행하고 있는 인권교육 현황은 다음 「표」와 같음.

[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시행하고 인권교육 현황 -1

교육 범주	교과목명	교육대상	교육 시간	교육 인원	강 사	
					성명	현직 및 경력
사회적 소수자 및 그들의 차별 관한 교육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응실태와 동기	사회복지관의 아동복지담당자, 아동복지시설의 담당자	2 h	(16)명 (1)회	김민정	이주여성의 집 위함 국장
	결혼이민자대책	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의 보건복지행정 및 여성복지 관련 업무담당 5-9급 공무원	2 h	(14)명 (1)회	이성미	여성가족부 가족문화팀장
	결혼이민자대책	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의 보건복지행정 및 여성복지 관련 업무담당 5-9급 공무원	2 h	(20)명 (1)회	이숙진	한국보건복지 인력개발원 교수
	법정부적 결혼이민자	시도, 시군구 복지평가업무 담당 6-9급 공무원	2 h	(72)명 (4)회	이성미	여성가족부 가족문화팀장
	결혼이주여성	자활후견기관의 1년 이상 경력자	2 h	(20)명 (1)회	이숙진	한국보건복지 인력개발원 교수
	결혼이주자가족	시도, 시군구 사회복지기획 업무담당 6-9급 공무원	2 h	(37)명 (1)회	이숙진	한국보건복지 인력개발원 교수
	결혼이주자가족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의 아동·청소년담당자, 가족복지담당자, 중간관리자	2 h	(40)명 (1)회	이숙진	한국보건복지 인력개발원 교수
여성 및 양성평등에 관한 인권교육	여성과 인권	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의 보건복지행정 및 여성복지 관련 업무담당 5-9급 공무원	2 h	(16)명 (1)회	이숙진	한국보건복지 인력개발원 교수
	여성과 인권	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의 보건복지행정 및 여성복지 관련 업무담당 5-9급 공무원	2 h	(20)명 (1)회	이숙진	한국보건복지 인력개발원 교수
사회적 약자에 관한 인권 교육	아동발달특성과 아동권리의 이해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의 아동복지 담당 6-9급 공무원, 경찰청 여성실 가족폭력 및 아동학대 업무 담당 6-9급 공무원	3 h	(36)명 (1)회	황옥경	서울신학대 보육학과 교수
	유엔아동권리협약의 현황과 문제분석		2 h		김인숙	세이브더칠드런 부회장
	아동안전권리정책		2 h		박종하	복지부 동안전권리팀 사무관
	아동발달특성과 아동권리의 이해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의 아동복지 담당 6-9급 공무원, 경찰청 여성실 가족폭력 및 아동학대 업무 담당 6-9급 공무원	3 h	(40)명 (1)회	황옥경	서울신학대 보육학과 교수
	유엔아동권리협약의 현황과 문제분석		2 h		김인숙	세이브더칠드런 부회장
	아동안전권리정책		2 h		박종하	복지부 동안전권리팀 사무관
	아동발달특성과 아동권리의 이해	가정위탁지원센터 실무자	3 h	(38)명 (1)회	황옥경	서울신학대 보육학과 교수

아동발달특성과 아동권리의 이해	사회복지관의 아동복지담당자 및 아동복지시설의 담당자	2 h	(16)명 (1)회	황옥경	서울신학대 보육학과 교수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해		2 h		김인숙	세이브더칠드런 부회장
아동안전권리 정책		2 h		곽수영	복지부 아동안전권리팀 팀장
아동권리모니터링 기법과 실제		3 h		황옥경	서울신학대 보육학과 교수
아동권리중심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2 h		이은주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아동권리 증진사례		2 h		신혜령	한국보건복지 인력개발원 교수
아동권리의 이해와 프로그램 적용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	2 h	(43)명 (2)회	김인숙	세이브더칠드런 부회장
아동권리의 이해와 프로그램 적용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	2 h	(40)명 (1)회	김인숙	세이브더칠드런 부회장
아동권리의 이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2 h	(70)명 (2)회	김인숙	세이브더칠드런 부회장
아동안전권리 정책		2 h		박종하	복지부 동안전권리팀 사무관
아동의 안전과 권리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장 및 실무자	2 h	(645)명 (7)회	정윤경	한국생활안전 연합 팀장
노인인권의 이해	노인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시도 및 시군구의 6-9급 공무원	2 h	(64)명 (2)회	이숙진	한국보건복지 인력개발원 교수
노인인권에 대한 이해	노인학대예방센터 상담원	2 h	(30)명 (1)회	이숙진	한국보건복지 인력개발원 교수
장애의 이해	시도, 시군구 애인복지업무 담당 6-9급 공무원	2 h	(59)명 (2)회	임성만	장봉혜림원 원장
정신장애인과 인권	사회복지시설 담당자	2 h	(30)명 (1)회	김문근	서울보건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회복지시설과 인권	시도, 시군구의 사회복지시설 지도 담당 6-9급 공무원	2 h	(25)명 (1)회	남기철	동덕여대 교수

위의 「표」 에서 파악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인권교육 현황을 실적(양적)으로 재구성하면 아래 「표」 와 같음.

[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권교육 현황 -2

교육범주	총 교과정수	교육대상	총 교육 참가 인원	총 교육 회수	강사 수
사회적소수자 및 그들의 차별에 관한 교육	7개	사회복지관의 아동복지담당자, 아동복지시설의 담당자 복지행정직(중앙·지방) 관련 업무담당 5-9급 공무원 자활후견기관의 1년 이상 경력자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의 아동·청소년담당자, 가족복지담당자	219명	10회	5명
여성 및 양성평등에 관한 인권교육	2개	복지행정직(중앙·지방) 관련 업무담당 5-9급 공무원	36명	2회	1명
사회적 약자에 관한 인권교육	23개 (아동 분야 18개/ 노인 분야 2개/ 장애 분야 2개/ 시설 분야 1개)	사회복지관의 아동복지담당자, 아동복지시설의 담당자 복지행정직(중앙·지방) 관련 업무담당 5-9급 공무원 경찰청 여성실 가족폭력 및 아동학대 업무 담당 6-9급 공무원 가정위탁지원센터 실무자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장 및 실무자 노인학대예방센터 상담원 사회복귀시설 담당자 노인복지업무 담당 지방 6-9급 공무원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지방 6-9급 공무원 아동복지업무 담당 지방 6-9급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담당 지방 6-9급 공무원	648명	34회	11명
총 교과정 현황 정리	32개	-	903명	46회	17명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2006년에 시행하고 있는 인권교육 지도자 양성과정 현황은 다음 「표」 와 같음.

[표] 사회복지분야의 인권교육 지도자 양성과정

과정명	교과목명	교육 대상	교육 시간	교육 인원	강사	
					성명	현직 및 경력
사회 복지 인권 지도자 과정	인권의 이해	사회 복지 시설의 중간 관리자	2 h	(60) 명 (2)회	정강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소수자의 인권이해		2 h		조여울	일다 편집장
	나 만나기		2 h		박현희	교사
	내가 경험한 인권현장 및 인권쟁점사례		2 h		이명목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부회장
	마음다지기		3 h		케서린한	이대평생교육원 강사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의 인권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2 h		임성만	장봉혜림원장
	토의 및 발표		3 h		이숙진	한국보건복지 인력개발원

7. 시민사회영역에서의 인권교육현황

최근 인권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은 다음의 <표>와 같다(윤정숙, 2003).

<표> 인권단체의 인권교육 활동 및 프로그램

단체	인권교육 프로그램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캠프, 교사 워크샵, 인권활동가 워크샵, 인권영화제, 인권교재 개발, 인권교육 자료실 운영
한국인권행동	인권학교, 경찰 및 교도소 공무원 대상 인권교육, 대학교 인권강의
울산인권운동연대	시민인권교육, 청소년 인권캠프, 대학생 인권강좌, 인권학교, 인권자료실 운영, 인권교육을 위한 조례제정 운동, 인권관련 자료집 발간
다산인권센터	인권영화제, 인권토론회, 인권포럼, 청소년 모의법정대본 공모 사업, 청소년 인권의식 조사, 인권매뉴얼 제작, 아동권협약 포스터 제작 및 보급, 청소년 인권캠프, 청소년 인권평화학교
인권운동실천연대	사회봉사활동을 통한 대학생 인권교육, 인권교재, 매뉴얼 발간 사업, 교회·성당을 통한 인권교육, 경찰인권교육, 인권운동가를 위한 인권교육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인권학교, 인권자료실 운영, 청소년 인권캠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평화인권교육, 인권운동 활동가를 위한 교육 활동,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국제민주연대	학교내 특별활동 교육, 청소년 인권·평화 마당, 교육을 통한 국제연대 활동

8. 대학에서의 인권교육

1990년대 중반부터 전국의 각 대학은 법학, 정치학, 국제 관계학적 측면에서 인권강좌들을 개설하여 운영하여 왔다. 다음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 결과이다.

<표> 대학 인권관련 교육과정 조사결과표 (예시) 2003년 기준, 국가인권위원회

대학명	교육 내용						향후 계획				
	교과명	과목성격	대상	시간 수	연인 원	교수 방법	개설 여부	예상 학점	대상	교과 내용	
가야대학교	법과 인권	계열기초 (교양)	1학년	3	65	강의중심형	1	3	4학년	피해자학	
가톨릭상지대학	인간과 사회	교양	1.2학년	2	93	참여유도형					
강릉대학교	법치주의와 인권	계열기초 (교양)	1학년	3	60	강의식	1	3	3학년	인권법	
건국대학교	인권법	전공선택	2학년	2	100	강의	1	2	4학년	인권과 시민 운동 외 2	
경남대학교	북한인권연구	전공선택	대학원생	3	5	강의중심형					
경동정보대학							1	2	1학년	인권과 법	
경상대학교	인권과 사회	전공선택	4학년	3	20	참여유도형	1	3	1학년	인권의 이해	
경성대학교	인권과 법	교양	전학년	2	108	강의중심형	1	2	1학년	인권의 이해	
공군사관학교							1	2	전학년	군대와 인권	
광주보건대학교							1	2	1	한국사회와 인권	
대신대학교	인권과 복지 외 2	교양선택	1학년	2	750	강의/토론					
대구대학교	법과 인권 외 7	교양선택	1	2	102	강의중심형	1	2	1학년	법과 인권	
군산대학교							1	3	전학년	법과 인권 외 2	
서원대학교							1	2	전학년	국제사회와 인권	
영남대학교	인권과 법	교양	전교생	3	1731	강의중심형					

배재대학교	현대사회와 인권	교양	전학년	2	131	강의중심형				
성덕대학							1	2	1학년	인권과 현대사회
용인대학교							1	3	1학년	여성과 인권 외 2
전남대학교							1	3	전학년	인권과 평화
경일대학교							1	2	1학년	인권의 이해
동의대학교	범죄와인권	교양	2-4학년	2	185	강의중심형	1	2	전학년	범죄와인권
부산대학교	인권과국가권력		학부과정	45/ 학기 당	35					
부산교육대학교							1	2	2학년	정치와 인권
서강대학교	인권과 정의 외 3	전공	전학년	3	141	현장체험형				
성공회대학교	인권과 평화 외 11	교양	2학년	2	31	강의중심형	1	2	2학년	인권과 평화
성신여자대학교							1	3	2,3학년	NGO와 인권교육
영산대학교	법과 인권	교양	전학년	2	37	강의중심형	1	2		법과 인권
우석대학교							1	2	전학년	현대사회와 인권
인제대학교							1	3	2학년	법과인권
중부대학교	인권과 국제사회	교양	전학년	2	164	강의중심형	1	2	전학년	인권과 국제사회
중앙대학교	청소년인권	전공	2학년	3	25	강의중심형	1	2	전학년	인권과 사회복지
창원대학교	범죄와 인권	교양	전학년	3	200	참여유도형				
천안대학교	법과 인권 외 3	교양	1,2학년	2	120	참여유도형				
침례신학대학교							1	2	1,2학년	인권과기독교
한려대학교							1	3	전학년	법과 인권

II. 한국인권교육에 대한 개괄적 평가

한국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출범 이후 인권교육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 이유는 압축적 경제성장과 민주화 과정에서 인권의식이 체계적으로 발전하지 못하였으며, 입시위주의 교육체계에서 인권을 교육기관에서 체계적으로 실시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유교전통과 일제의 잔재, 군사문화 및 민주화와 통일이라는 여러 가치가 사회 전반에 혼재되어 있음으로 인권의식의 정착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에서의 인권교육은 수요적 측면에서의 요구가 매우 강함으로 인해 양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팽창하는 추세이지만, 질적인 측면인 인권교육에 대한 제도와 정책이 부재하며, 인권교육을 실시할 만한 물적 기반 또한 교육이 갖추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인권교육이 다방면에 걸쳐 실시되고는 있지만 규모면에서 매우 미비한 실정이며, 그 실효성도 의심된다. 대개 특강 및 강의위주로 진행되는 현 인권교육은 인권교육 강사 및 교재 등 인권교육을 위한 기본 인프라의 미비 등 해결해야할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1.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기능

인권교육 강사단 구성 및 파견, 몇몇 인권교재 발간, 시청각 자료발간 등 초보적 수준에서의 인권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 공공부분에서의 교육이 확대되고 있으나, 인권교육 정책이 명확하지 않고 체계적인 접근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경찰, 법무, 군, 기타 공공부분에서의 인권교육 기능

직무교육, 입직교육, 연수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인권교육이 확대되고 있으나, 인권 감수성을 개발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이다. 특히 특강형태의 교육이 대부분이며, 인권강사의 자질 및 교육담당자의 무관심으로 인해 인권교육의 효율성이 반감되는 양상을 보인다.

3. 초중등학교에서의 인권교육 기능

국가인권위원회의 교원 인권연수과정, 인권교육 연구학교 지정 등 다양한 형태의 인권교육이 시도되고, 인권교육 교사모임, 학부모 모임 등 교육주체의 진지한 고민이 모색되고 있으나, 기존 도덕 및 윤리교육, 사회교육의 변형된 형태로 인권교육이 자리 잡는 추세이다. 한국의 고질적 입

시교육으로 인해 인권교육을 위한 토대가 전혀 마련되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현장에서의 군사문화, 획일적 문화, 교육 권위주의 등이 인권교육의 방해요소가 되고 있다.

4. 대학에서의 인권교육 기능

전국 약 40여개 대학에서 인권관련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법학, 사회학, 국제 관계학적 측면의 인권을 둘러싼 학문적 고찰이 대부분이다. 인권감수성이 부족한 교수 및 강사에 의한 진행, 국제 인권법에 대한 일반적 이해 등 일반적 인권교육으로 보기 어려운 형태의 강좌가 주를 이루고 있다.

5. 인권단체에 의한 인권교육 기능

다산 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실천시민연대, 울산인권연대 등 몇몇 인권단체들이 인권 학교, 인권캠프, 인권강좌, 인권아카데미 등 여러 다양한 형태로 시민, 학생, 교사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여러 다양한 인권교재를 개발하고 있으나, 규모와 교육효과 등의 측면에서 그 실효성이 극히 미비한 실정이다.

Ⅲ. 한국인권교육의 과제

국가는 국민에게 인권교육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경제논리, 돈의 논리만이 지배하는 한국에서 새로운 국가목표이자 국가철학으로, 인간의 삶의 방식으로 인권이 정착되게 하기 위해서는 인권교육의 중요성이 최우선적 의제임을 인식해야한다. 이를 인식함과 동시에 한국에서 인권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다음의 제도와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1. (가칭) 인권교육법의 제정

국가인권위원회는 2004년 7월부터 인권교육 법제화방향관련 외부전문가 자문과 2006년 2월 16일 중점추진과제로 선정하면서 (가칭)인권교육법의 제정을 위해 노력하여 왔다. 그 후 인권교육법제화 TFT를 구성하여 9차례의 회의를 가졌으며 입법화를 위한 법률 초안을 구성중이다. (가칭) 인권교육법은 인권교육이 국가의 책무임을 선언함과 동시에 한국인권교육발전을 위한 기

본토대가 될 것이다. 인권교육에 대한 사회적 규범을 제공함과 동시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교육을 위한 조례제정에 단초를 제공하며, 인권교육을 위한 인적, 물적, 재정적 기반으로 작용할 것이다.

2. (가칭)인권교육원의 설립

(가칭) 인권교육법은 (가칭) 인권교육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해 규정해야한다. (가칭) 인권교육원은 수입사항과 역할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인권교육원의 운영주체를 명확히 하며, 어떻게 관리 감독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담겨야 한다. 또한 인권교육원은 국가철학으로서의 인권의 실행기관으로서 인권교육정책의 수립 및 실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인권교육관련 연결고리 역할, 인권교육관련 각 학교 및 공공부분에서의 교육 시스템 제공 및 점검, 인권교육관련 교재 및 시청각 자료 개발, 전문적인 인권교육 강사의 양성, 그리고 인권단체와의 인권교육에 대한 협력체계 등을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국가 및 각 시민사회영역은 다음의 과제를 장기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첫째, 권위주의 문화 및 군사문화를 종식하고, 유교전통 및 윤리교육, 도덕교육을 뛰어넘는 국가적 가치로 인권을 설정하여 인권문화의 창달을 위해 인권교육이 국가적 과제임을 사회전반에 인식시켜야 한다.

둘째,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인권기관과 단체들은 인권교육에 관한 장기적 정책과 실행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셋째, UN을 비롯한 국제인권기구에서의 인권해석과 국제인권법의 발전방향에 대한 국내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내의 인권영역에서의 적용을 가능케 하여야 한다.

넷째, 인권교육의 토양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는 한국의 교육현실과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문제제기를 비롯한 다양한 교육개혁운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권교육 운동가의 육성과 전문적이고 인권친화적인 인권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노력하여야 한다.

(별첨)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권교육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교를 비롯한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에서의 인권교육을 활성화하여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방지하고, 기본적 인권의 보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권교육’이라 함은 인권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습득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와 태도, 품성을 키우며 인권침해 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행동 능력을 기르고, 타인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실천력을 길러냄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일체의 교육적 활동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인권교육의 기본원칙)

- ① 인권교육은 인권의 보편성·불가분성·상호의존성을 기반으로 한다.
- ② 인권교육은 학습자들이 차이를 존중하고 인정하며, 성별, 종교, 장애,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적 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견해,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 등 기타 사항에 근거한 편견·차별행위를 반대하고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 ③ 인권교육은 학습자가 속한 공동체의 삶과 연관된 인권현안 문제를 국제적 인권기준에 의거하여 분석·비판·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 ④ 인권교육은 인권이 보장되는 학습 환경에서 학습자 중심적 교수방법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4조(인권교육을 받을 권리)

모든 사람은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인권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규정에 따른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교육시설이 포함된 각 교육단계와 교육영역에서 체계적이고 항구적으로 교육을 해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권교육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인권교육에 대한 계획 수립과 시행
2. 인권교육에 필요한 자원마련과 시설의 지원
3. 인권교육 관련 전문 인력 양성
4. 인권교육 시행에 대한 지원
5. 그 밖의 인권교육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이행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등 각급 학교에서 인권교육이 촉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시설 및 사업장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그 시행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기관에서 인권교육의 책무)

① 공공기관은 인권침해, 차별행위의 예방을 위하여 소속 종사자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공공기관은 소속 종사자를 국내외의 인권기관에 위탁하여 일정 기간 인권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8조(공공기관의 협조)

- ①공공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인권교육에 관한 종합계획 권고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협조를 요청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②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인권교육에 관한 소관 업무별 시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인권교육위원회)

- ①인권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인권교육위원회’를 둔다.
- ②인권교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인권교육에 관한 종합계획 권고안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
 2. 인권교육 시행계획 및 지침 수립 등에 관한 사항
 3. 인권교육원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인권교육 촉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인권교육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인권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③인권교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인권교육종합계획의 수립)

- ①위원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쳐 5년 단위의 인권교육에 관한 종합계획 권고안(이하

32 인권비로라 실천

“종합계획 권고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종합계획 시행 1년 이전까지 대통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종합계획 권고안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교육의 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주요 인권교육정책에 관한 사항
3. 민간부문 등에 대한 주요 인권교육지원정책에 관한 사항
4. 인권교육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지원에 관한 사항
5. 인권교육 실태조사평가 및 시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인권교육 추진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③대통령은 제1항의 종합계획 권고안을 존중하여 인권교육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도지사·군수·구청장(자치구에 한한다) 및 시도교육감은 제10조 제3항의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제1항에서 정한 세부시행계획 이행결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인권교육관계자협의회 설치)

①위원회는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공공기관 등과의 협의·조정 기타 상호간의 협력 증진을 도모하는 ‘인권교육관계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인권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협의회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공공기관의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그 공공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2.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3. 인권교육 활동을 하는 인권단체의 종사자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 ③협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인권교육원의 설치)

- ①위원회는 인권교육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인권교육원을 둔다.
- ②인권교육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분야 전문가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
 2.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 인권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3. 제7조 제2항에 의거 공공기관이 위탁한 소속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인권교육 원격교육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5. 인권교육프로그램 등 인권교육자료 연구 개발·보급 및 관리
 6. 국내외 인권관련 정보자료 수집과 연구 및 간행물 발간
 7. 인권교육원 이외의 자가 행하는 인권교육사업에 대한 지원·육성
 8. 인권교육관련 국제협력 사업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위수탁 및 부대사업
- ③인권교육원의 조직,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인권교육원은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수혜자에게 그 실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인권교육 실태조사 등)

- ①위원회는 공공기관 등에서 이 법에 따른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이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및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및 실태조사 등의 결과 인권교육이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해 기관이나 단체에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인권교육의 시행과 관련한 위원회의 조사 및 시정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인권교육 촉진 지원 등)

①위원회는 인권증진과 인권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인권교육 연구 등 인권교육 관련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등록된 후 3년 이상 인권관련 활동을 한 기관 또는 단체
3. 그 밖에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학술연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권교육의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제1항 각호의 기관의 인권교육 활동과 인권보호·증진 행사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그 밖에 인권교육 촉진을 위한 지원사항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 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